

행 정 자 치 부

훈계 · 시정 요구

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고성군, 인제군

관 련 자 ① 고성군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② 인제군 ○○○○○○소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1. 13.부터 2015. 12. 17.까지 ○○○○과에 근무하면서 수질분야 행정처분 업무의 실무담당자로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2. 10.부터 2016. 1. 12.까지 ○○○○과에 근무하면서 수질분야 행정처분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.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“기준초과배출량×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×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×지역별 부과계수×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×배출허용기준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”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

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(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)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,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

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 가목 비고6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%이상 600%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600%를 초과한 경우에는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1. 고성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부적정

① 개선명령 차수 적용 위반

공성군 ○○○○과는 ○○군 ○○면 ○○○로 00-00번지 소재 ○○○○ 외 1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·검검 시 시료채취한 폐수의 수질측정 결과가 위 가중처분(200%이상 600%미만) 기준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위 기준에 따라 2차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나, 1차 개선명령을 하였으며

<개선명령 차수 위반 내역>

사업장명	주소	점검일	개선명령(차수)	
			기존처분	정정
○○○○○	고성군 ○○면 ○○○로 00-00	2015. 9. 13	1	2
○○○○○	고성군 ○○면 ○○○로 00-00	2015. 9. 13	1	2

② 배출부과금 과오 부과

○○○○ 등 2개 업소 3건의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면서 위 법령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2회 위반의 경우에는 1.21, 3회 위반의 경우에는 1.331로 적용하였어야 하나, ○○○○의 경우 1.47로 산정하였으며, ○○○○은 2015. 5. 13.의 경우에는 1.47로, 2015. 6. 10.의 경우에는 1.47로 적용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과다 부과하였다.

<배출부과금 집행 과오 현황>

(단위 : 원)

사업체명	부과일자	부과금액	재산정 금액	차액
○○○○○	2015. 5. 13	2,796,800	2,579,620	217,180
○○○○○	2015. 5. 21	1,606,350	1,410,660	195,690
○○○○○	2015. 6. 10	579,070	571,590	7,480
합계				420,340

2. 인제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부적정

① 개선명령 차수 적용 위반

인제군 ○○○○과는 ○○군 ○○읍 ○○리 000번지 소재 (주)○○○에 대하여 지도·점검 시 시료채취한 폐수의 수질측정 결과를 잘못 산정하여 2차 개선명령을 하였어야 하나, 3차 개선명령을 하였으며

<개선명령 차수 위반 내역>

사업장명	주소	점검일	개선명령(차수)	
			기존처분	정정
(주)○○○	인제군 ○○리 000	2014.06.10	3(총질소)	2

② 배출부과금 과오 부과

인제군 ○○읍 ○○리 000번지 소재 (주)○○○ 초과배출부과금을 각각 산정하면서 2014. 6. 10. 위 법령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.1으로 적용하였어야 하나, 1.21(총질소 1.331)으로 적용하였고, 2014. 12. 24. 경우에는 2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1.21으로 적용하였어야 하나, 1.331으로 적용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과다 부과하였다.

<배출부과금 집행 과오 현황>

(단위 : 원)

사업체명	부과일자	부과금액	재산정 금액	차액
(주)○○○	2014.09.24	28,483,540	24,876,270	3,607,270
(주)○○○	2015.02.16	10,377,650	9,479,680	897,970
합계				4,505,240

위와 같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부적정과 관련하여 고성군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과 인제군○○○○○○소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실무책임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고성군수, 인제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부당하게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여 환부 등 적의 조치하시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